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정 보 통 신 진 흥 및 융 합 활 성 화
등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7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법령정비의 요청 절차와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확대(안 제8조의2 제5항, 제6항)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사전검토위원회의 인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확대 함

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안 제42조의5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법령정비 요청 및 처리 절차 신설(안 제42조의5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 제12항, 제13항)

- 1) 법령정비 요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명시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 법령정비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고 결과를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 3)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
- 4)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에 착수하였거나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라. 법령정비요청자의 임시허가 신청 절차 신설(안 제42조의5 제9항, 제10항)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받은 법령정비요청자의 임시허가 신청 기간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청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 발급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간주 기간 구체화(안 제42조의5 제5항, 제11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정비요청자로 하여금 연장되는 유효기간을 알 수 있도록 함

바.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에 따른 위탁업무 등 정비(안 제42조의7제1항, 제43조제3항)

법령정비요청제도의 신설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위탁 범위를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5항 중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를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5명”을 “20명”으로 한다.

제42조의5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법 제38조의2제4항 후단”을 “법 제38조의5 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의5 제2항부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제42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실증계획의 이행 현황

나.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갱신 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요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에 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8조의5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의5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내용에는 법령정비의 필요여부, 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대상 여부가 포함돼야 한다.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37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제42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⑪ 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2.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기

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나.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 1) 임시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기간의 만료일
- 2)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⑫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42조의6제2항 중 “법 제38조의3제3항”을 “법 제38조의5제9항”으로 하고, 제4항 중 “법 제38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38조의3제4항 및 법 제38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42조의7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서 및 관련서류 검토 지원
5.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요청서 및 관련서류 검토 지원

제43조제3항제4호 중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4항 단서”를 “법 제38조의2제1항”으로 하고, “규제특례신청 및 연장신청의 접수”를 “규제특례신청의 접수”로 하며, 제4호의2부터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4의3. 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요청 접수

4의4. 법 제38조의5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접수

별표2 2. 개별기준, 다목 중 “법 제38조의3제3항”을 “법 제38조의5제9항”으로 하고, “지정 결과”를 “적용 및 사업 결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 ④ (생략)	제8조의2(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는 <u>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u>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사전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 <u>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u> ----- ----- -----.
⑥ 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사전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전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 ----- ----- 20명 ----- ----- ----- ----- ----- ----- -----.

1.~ 3. (생 략)
제42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신청기간 및 신청내용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2.~3. (생 략)
<신 설>

1.~ 3. (현행과 같음)
제42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등) <삭 제>

① 법 제38조의5제2항-----

-----.

1. -----
-----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결과 자료

2.~3.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제42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실증계획의 이행 현황

나.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불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갱신

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
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하
다)

④ 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요청서를 제출받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
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
하는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
장확인서에 법 제38조의5제7항
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
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
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
의5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의 정
도

2.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
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8조의5
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
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의5 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내용에는 법령정비의 필요 여부, 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대상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37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제42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⑪ 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2.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나.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1) 임시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기간의 만료일

2)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⑫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42조의6(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감독) ① (생략)

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을 받은 자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생략)

③ (생략)

④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착수 및 완료 사실을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2조의7(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42조의6(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38조의5제9항-----

-----.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38조의3제4항 및 법 제38조의5제4항-----

-----.

제42조의7(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① -----

업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 한상공회의소”라 한다) 및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 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 관·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3. (생략) <신설>	----- ----- ----- ----- ----- ----- ----- ----- ----- 1.~3. (현행과 같음) 4.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서 및 관련서류 검토 지 원 5.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법령 정비요청서 및 관련서류 검토 지원 6. ----- ----- ----- ----- -----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 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인정하는 업무	----- ----- ----- ----- -----
제43조(업무의 위탁) ③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상 공회의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 융합등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제43조(업무의 위탁) ③ ----- ----- ----- ----- ----- ----- ----- ----- -----

위탁할 수 있다. 1.~3. (생략) 4.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 제특례신청 및 연장신청의 접 수 <신설>	----- 1.~3. (현행과 같음) 4. 법 제38조의2제1항----- ----- 규제 특례신청의 접수 4의2.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 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 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4의3. 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 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 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요청 접수 4의4. 법 제38조의5제9항에 따 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접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
1. (생략) 2. 개별기준 가.·나. (생략) 다. 법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 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38조의5제9항----- ----- 적용 및 사업 결과----- -----

에 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연 락 처	(044) 202 - 6113